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존 체육시설의 이스포츠 경기장 활용 근거 마련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9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존 체육시설의 이스포츠 경기장 활용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2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6.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기존 체육시설의 이스포츠 경기장 활용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¹⁾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생략)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불링장, 볼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현행	개정안
	역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²⁾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일부 지역에만 설치³⁾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에 제약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역 상설경기장은 현재 부산·광주·대전·경남 4개 시·도에 조성되어 있음.(첨부한 [참고2] 지역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 현황 자료 참조)

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상설경기장은 수용인원이 500~1,000석 규모로 지역 리그·소규모 대회 운영에는 적합하나 수천 명 이상의 관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 개최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간 국내 주요 이스포츠 대회는 실내체육관 등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다수 개최되어 왔다고 설명함.⁴⁾

문 의 처
02)6788-5376

4) 첨부한 [참고1] 최근 10년간 체육시설 활용 국내 주요 이스포츠 대회 현황 자료 참조

참고 1

최근 10년간 체육시설 활용 국내 주요 이스포츠 대회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아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

연도	대회명	개최장소	시설 구분	지역
2016	LCK 스프링 결승전	올림픽공원KSPO돔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
2017	LCK 스프링 결승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실내 체육관	인천
2018	LoL 월드챔피언십 (4강)	광주 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실내 체육관	광주
2018	LoL 월드챔피언십 (결승)	인천 문학경기장	종합 경기장	인천
2022	LCK 서머 결승전	강릉아레나	실내 체육관	강원
2023	LCK 스프링 결승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실내 체육관	서울
2023	LoL 월드챔피언십 (8강·4강)	부산사직실내체육관	실내 체육관	부산
2023	LoL 월드챔피언십 (결승)	서울고척스카이돔	돔 야구장	서울
2024	LCK 스프링 결승전	올림픽공원KSPO돔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
2024	LCK 서머 결승전	경북 경주실내체육관	실내 체육관	경북
2025	2025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제천체육관	실내 체육관	충북
2026	아시아이스포츠대회	경남 진주실내체육관	실내 체육관	경남
2026	Road to MSI (MSI 대표선발전)	원주종합체육관	실내 체육관	강원
2026	LCK 결승전	올림픽공원KSPO돔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권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구축을 통한 이스포츠 경기장 수도권 편중 현상 완화 및 지역 이스포츠 저변 확대
- (추진체계) 문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자체 등 주관기관
- (지원내용) 이스포츠 경기장 공사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지원
 - * 지방비 50% 이상 매칭 필수, 국비 지원 최대 40억 한도
- (추진현황) 부산·광주·대전·경남 4개소 구축 완료, 충남(아산) 구축 중, 충북(제천) 구축 예정

구분	부산 (‘20.11.18. 개관)	광주 (‘20.12.20. 개관)	대전 (‘21.9.15. 개관)	경남(진주) (‘24.5.17. 개관)
사업기간	‘19.1.1.~‘20.11.30	‘19.1.1.~‘20.11.30	‘19.1.1.~‘21.7.31	‘21.7.19. ~‘24.4.30.
위치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 삼정타워 15~16층	광주 남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첨단과학관 북관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규모 (총면적 기준)	2,739㎡ (주경기장 330석, 보조경기장 144석)	4,290㎡ (주경기장 1,005석, 보조경기장 160석)	4,595.7㎡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50석)	약 4,933㎡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76석)
소요예산	60억 (국고 30억, 자부담 30억)	60억 (국고 30억, 자부담 30억)	70억 (국고 30억, 자부담 40억)	80억 (국고 30억, 자부담 50억)
구분	충남(아산) (‘26. 개관 예정)		충북(제천) (‘28. 개관예정)	
사업기간	‘23.8.1.~26.12.31.		‘26.1.~‘28.10.(예정)	
위치	충남 아산시 장재리 강소특구 내 (배방읍 장재리 2135)		충북 제천시 명동 194-2번지 일원	
규모 (총면적 기준)	약 5,675㎡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100석)		약 4,305㎡ (주경기장 500석)	
소요예산	200억 (국고 40억, 자부담 160억)		300억 (국고 40억, 자부담 260억)	